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63 발의연월일: 2021. 8. 23.

찬 성 자:송기헌·김영배·서영석

오영환 · 용혜인 · 이광재

이성만 • 이형석 • 조오섭

조정훈・최종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·도지사는 시장지역, 공장·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, 소방청에서는 지정 지구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하며,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.

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구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·관리되지 않고 있는데, 얼마 전에 강원도 원주의 철거 예정 주택 밀집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. 이는 화재 현장 근처에 소화전이 있었지만 고장이 나 있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이뤄지지 못했기때문인데, 이러한 지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 1항제8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"제7호"를 "제8호"로 한다.

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정비구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 | 제13조(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) |
|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| ①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| |
|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| |
|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 | |
| 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 | |
| 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(火災 | |
| 警戒地區)로 지정할 수 있다. | |
| 1. ~ 7. (생 략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8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|
| | 제16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|
| | 정비구역 |
| <u>8.</u> 그 밖에 제1호부터 <u>제7호</u> 까 | <u>9.</u> <u>শী৪ই</u> |
| 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 | |
| 청장·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| |
| 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| |
|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| |
| ② ~ ⑥ (생 략) 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